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소지 외 지역에서 신고어업 허용〉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08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주소지 외 지역에서 신고어업 허용	2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위성곤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9. 24.

3. 회 부 일 : 2024. 9.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제40조·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등 2개 어업을 신고어업으로 분류한 것은 타 어업에 비해 어획강도가 매우 낮고 영세 어업인이 생계를 위해 영위하는 어업이기 때문인데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를 고려하여 근거지를 옮기면서 조업을 하는 원정 물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이 늘고 있음.

이에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개인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한 원정 물질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주소지 외 지역에서 신고어업 허용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주소지에서 신고어업(맨손·나잠어업)을 위한 신고를 한 자가 주소지 이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신고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단서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신고어업) ① 제7조·제40조 · 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 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신 고일을 기준으로 조업장소를 관 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정한다)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8조(신고어업) ① ----- ----- ----- ----- ----- ----- ----- ----- ----- ----- ----- 다만, 주소지 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주소지 이외 지역의 시장·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는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신고

② ~ ⑨ (생 략)	어업을 할 수 있다. ② ~ ⑨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수산업법」 제48조는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하여 같은 조에 따른 신고어업 영위를 위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고어업 요건으로 조업구역에 일정 기간 동안 주소를 둔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8755호¹⁾)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도입 당시 취지는 지역어업인과 타지역 어업인, 레저활동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비어업인 간 지속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업하려는 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한 것임.

□ 그러나 신고어업의 유형인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의 경우 어업방법의 제약 등²⁾으로 인해 타 어업 대비 어획강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어업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영위하는 특성이 있는바, 이와 같은 제도 변화 이후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를 고려해 근거지를 옮기면서 조업하는 이른바 ‘원정 물질’이 사실상 차단됨에 따라 영세 어업인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1) 2022.1.11. 전부개정, 2023.1.12. 시행

2)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맨손어업은 손으로 낚, 호미, 해조틀이 및 갈고리류를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방법에 한정되고, 나잠어업도 산소공급장치를 사용할 수 없어 다른 장비를 사용한 어업에 비해 어획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법령상 신고어업의 유형 및 개념]

구 분	주요 개념
신고어업	면허·허가어업 외의 어업으로 신고해야 하는 어업(수산업법 제48조)
나잠어업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낚·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수산업법 제48조,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맨손어업	손으로 낚·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수산업법 제48조,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 이에 개정안은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어업신고 증명서를 취득한 신고어업인이 주소지 이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6개월 간 주소를 두지 않아도 신고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조업구역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주소지 유지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이른바 ‘원정 물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당초 현행 제48조제1항의 도입 취지를 살펴보면, 과거 일부 타 지역 어업인이 지역을 이동하며 어획활동을 함에 따라 수산자원을 둘러싼 지역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했고, 레저인 등이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받아 조업하는 등 지역의 영세 어업인·어촌계와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교적 최근 개정(2023.1.12. 시행)되었으므로,

개정안 입법 이후 기존 지역 어업인과 타 지역 어업인, 레저활동으로 어획활동을 하는 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및 이러한 분쟁의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단순히 ‘주소지 이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정 물질을 허용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원정 물질을 하려는 ‘조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구체화하고, 그 기준 등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영세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지역 어업인과의 분쟁 해소도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만 개정안의 경우 원정 물질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이외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장의 허가 과정에서 지역어업인과의 분쟁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또한, 현재 「수산업법」 제40조 이하에 규정된 ‘허가어업’과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해, 개정안의 ‘허가’를 ‘승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³⁾.

3) 다만, 법제상 허가과 승인은 그 개념과 용례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해당 정부의견은 종래 허가어업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행위에 대해 용어만 변경한 것으로 이해됨.

문 의 처
02)6788-5422

참고 1

신고어업 개요

- (정의) 면허·허가어업 이외 어업으로 신고해야 하는 어업(수산업법 제48조)
- (신고어업의 종류) 맨손어업, 나잠어업(수산업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26조)
 - (맨손어업) 손으로 낚·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 (나잠어업)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낚·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 (유효기간 및 조업수역) 유효기간은 5년이며,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의 관할수역을 조업수역으로 함
- (신고어업인 준수사항) 수산업법 제48조
 -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준용규정) 신고어업에 대해서 수산업법 제3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와 제33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을 준용함
- (신고어업 현황)

단위 : 건

신고어업 총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4,458	623	8,929	1,131	1,301	1,406	51,991	16,550	45,203	1,408	2,983	2,933
신고어업	맨손어업	122,000	1	8,257	-	1,288	128	49,921	15,414	44,771	163	1,900	247
	나잠어업	12,366	622	672	1,131	13	1,278	2,068	1,136	432	1,245	1,083	2,686